

예 산 총 칙

제1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·특별회계 세입·세출예산 총액 및 회계별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 : 천원)

구		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		계	7,231,807,935	216,954,238
일		반		
회		계	5,947,632,304	178,428,969
특		별		
회		계	1,284,175,631	38,525,269
	공 기 업 특 별 회 계		298,394,525	8,951,836
	① 상 수 도 사 업		147,732,120	4,431,964
	② 하 수 도 사 업		150,662,405	4,519,872
	기 타 특 별 회 계		985,781,106	29,573,433
	① 의 료 급 여 기 금		428,981,897	12,869,457
	② 수 질 개 선		2,515,034	75,451
	③ 풍 영 정 천 유 지 용 수 공 급 사 업		304,727	9,142
	④ 하 남 3 지 구 도 시 개 발		1,105,396	33,162
	⑤ 택 지 개 발 사 업		100,921	3,028
	⑥ 교 통 사 업		31,235,544	937,066
	⑦ 광 역 교 통 시 설		4,424,700	132,741
	⑧ 학 교 용 지 부 담 금		23,720,851	711,626
	⑨ 산 업 단 지		5,411,939	162,358
	⑩ 중 소 기 업 육 성 기 금		52,859,610	1,585,788
	⑪ 도 시 철 도 사 업		245,627,670	7,368,830
	⑫ 소 방		189,492,817	5,684,785

제2조 세입·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“세입·세출예산” 과 같다.

제3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“해당 없음”

제4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“계속비사업(변경)조서” 와 같다.

제5조 명시이월사업은 “해당없음”

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“30,892,090천원” 으로 한다.

제7조 일반 및 특별회계(공기업특별회계 포함) 지방채발행액은 “24,000,000천원” 으로 한다.

지방채차입한도액(기본한도)은 “205,200,000천원” 으로 한다.

제8조 「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」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, 지방채상환(원리금 등), 재해대책 및 복구비는 상호간 또는 타 비목에서 이용할 수 있다.